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31
----------	-------

발의연월일 : 2026. 8. 10.

발 의 자 : 박수영 · 이인선 · 김재섭
조지연 · 박충권 · 곽규택
유상범 · 김승수 · 엄태영
유용원 · 최보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공급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조세 행정의 비효율성과 납세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함으로써 영세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 소득 확대와 및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 129조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1항제3호 본문 중 “1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u>100분의 3</u> .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3. ----- ----- <u>1000분의 15</u> ----- -----.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략)	② ~ ⑪ (현행과 같음)